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16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임오경 · 박수현 · 허성무
김윤덕 · 박 정 · 황명선
서영교 · 임미애 · 문정복
김용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인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체육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체육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체육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 ③ 체육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영재학교를 지도·감독한다.
- ⑤ 그 밖에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u>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체육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체육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② 체육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u> <u>③ 체육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영재학교를 지도·감독한다.</u> <u>⑤ 그 밖에 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